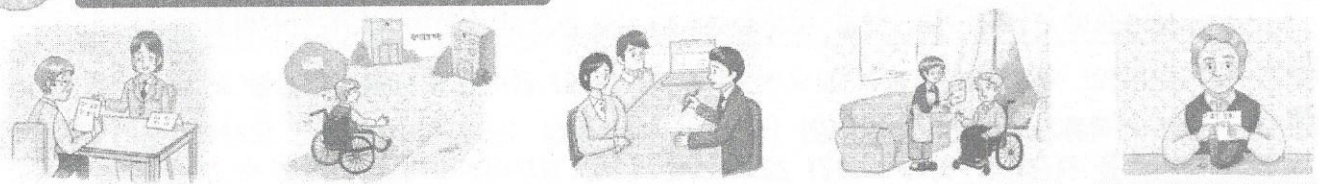
#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문

h·well 국민건강보험

##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



필수서류 수령 → 장기요양기관 찾기 →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 →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→ 본인부담금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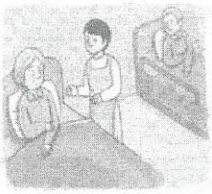
## 장기요양급여 종류

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로 구분되며 **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**, 특별현금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재가급여

| | |
|---|---|
|  방문요양 | 요양보호사(장기요양요원)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. |
|  방문목욕 |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. |
|  방문간호 |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치과위생사가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,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. |
|  주·야간 보호 |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·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합니다.(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) |
|  단기보호 |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합니다. |
|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|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, 식사준비,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·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. |
|  복지용구 | 수급자의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·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. |

### 시설급여



| | |
|---|---|
| 노인요양시설 | 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·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. |
|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| 치매·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·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.(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포함) |

### 특별현금급여

| | |
|---|---|
| 가족요양비 |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·벽지지역 거주, 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|

##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

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| | 재가급여 | | | 주·야간보호급여 |
|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| | | | | |
| 장기요양 가족휴가제(종일 방문요양, 단기보호급여), 기타 재가급여(복지용구) | | | | | |

- 3~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**'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'**을 할 수 있습니다.
- **(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) 1회당 12시간 이상**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**연간 22회**(11일, '25.1월부터)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##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비율 / 재가급여 월 한도액 ('25.1.1.기준)

**본인부담 비율**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

| 구분 | 일반대상자 | 40%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<br>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재가급여·복지용구 | 15% | 9% | 6% | 면제 |
| 시설급여 | 20% | 12% | 8% | |

**월 한도액** 한 달(매월 1일~말일)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

▶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**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**합니다.

| 등급 | 월 한도액<br>(원) | 본인부담금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일반대상자 | 40%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<br>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|
| 1등급 | 2,306,400 | 345,960 | 207,570 | 138,380 | 면제 |
| 2등급 | 2,083,400 | 312,510 | 187,500 | 125,000 | |
| 3등급 | 1,485,700 | 222,850 | 133,710 | 89,140 | |
| 4등급 | 1,370,600 | 205,590 | 123,350 | 82,230 | |
| 5등급 | 1,177,000 | 176,550 | 105,930 | 70,620 | |
| 인지지원등급 | 657,400 | 98,610 | 59,160 | 39,440 | |

## 재가급여비용 ('25.1.1.기준)

**방문요양**

| 급여제공시간 | 금액(원) | 본인부담금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일반대상자 | 40% 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<br>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
| 30분 이상 | 16,940 | 2,540 | 1,520 | 1,010 |
| 60분 이상 | 24,580 | 3,680 | 2,210 | 1,470 |
| 90분 이상 | 33,120 | 4,960 | 2,980 | 1,980 |
| 120분 이상 | 42,160 | 6,320 | 3,790 | 2,520 |
| 150분 이상 | 49,160 | 7,370 | 4,420 | 2,940 |
| 180분 이상 | 55,350 | 8,300 | 4,980 | 3,320 |
| 210분 이상 | 61,670 | 9,250 | 5,550 | 3,700 |
| 240분 이상 | 68,030 | 10,200 | 6,120 | 4,080 |

**방문목욕**

| 구분 | | 금액(원) | 본인부담금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일반대상자 | 40% 감경대상자 | 60%감경대상자<br>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| 차량 내 목욕 | 86,480 | 12,970 | 7,780 | 5,180 |
| | 가정 내 목욕 | 77,970 | 11,690 | 7,010 | 4,670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 | 48,690 | 7,300 | 4,380 | 2,920 |